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숭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32

발의연월일: 2024. 7. 17.

발 의 자: 백승아·박해철·서미화

민병덕 • 박지혜 • 김 윤

한창민 · 오세희 · 용혜인

조계원 · 김성환 · 허 영

정혜경 · 황정아 · 민형배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치원교원 및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반면, 대학교원은 그러한 제한이 없음.

교육감은 교육 예·결산, 유·초·중·고등학교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유·초·중등교원의 입후보도 대학교원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유·초·중등교원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려움.

이에 유·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 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유·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 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제47조 및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801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831호)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0호)의 의 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 립학교의 교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직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육감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 2.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 3.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9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제49조제1항 전단 중 "제60조"를 "제60조(「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이 제47조제1항에 따라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후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9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겸직의 제한) ① 교육감은	제23조(겸직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u><단서 신설></u>	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직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교육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2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	
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u>지방공무원</u>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	
립학교의 교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은 선거일 전 90일(제49조제1	
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	
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 만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선 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 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략)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 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

-----. 다만, 교육감선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 는 경우
- 2.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 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 교육 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 3.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 른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선 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9조제1항제4호의2에 따 라 휴직하는 경우
- ② (현행과 같음)

1	 	 	

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 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 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 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 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 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 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 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74 조까지, 제79조부터 제82조까 지, 제82조의2,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제85조, 제86조 (제2항제2호 단서・제3호 및 제6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87 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 2,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 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 부터 제149조까지, 제149조의2, 제151조부터 제159조까지, 제16 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 의2,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1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 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 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

제60조(「공직선거법」 제6
0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국
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교육공무원 또는 「사
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
학교 교원이 제47조제1항에 따
1 21 1121 12011
라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라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 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 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 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 2, 제278조, 제279조 중 시·도 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_	
	•	
\bigcirc . \bigcirc /	형행과 같음)	
1/1/ - 10/	57 W 47 (2 G)	

②·③ (생 략)